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간절비 반영 -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준시장단가제도를 적용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개정하고 10월 12일 공고분부터 이를 적용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제도로 변경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적한 단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예규에서는 공사원가 계산시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비에 계상토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했다.

한편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설계비 작성 비용을 공사예산의 10/10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절 총 칙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생략)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생략)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생략)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생략)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3. 지수조정을 관련 용어의 정의</p> <p>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u>실적공사비</u>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로 한다.</p> <p>A ~ F (생략)</p> <p>G : <u>실적공사비</u>(공사에 한하며, G¹ : 토목부문, G² : 건축부문, G³ : 기계설비부문, G⁴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¹, G², G³, G⁴)의 <u>실적공사비</u>에 포함한다. 이하같다.)</p> <p>H ~ Z (생략)</p> <p>나. ~ 다. (생략)</p> <p>1) ~ 3) (생략)</p> <p>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u>실적공사비</u> 단가의 전체 평균치</p> <p>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p> $H_0 = A_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_1 = 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_0 = \text{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p>* 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p> $I_1 = \text{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p>*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p> <p>6) ~ 7) (생략)</p> <p>5. 계약금액의 조정</p> <p>가. ~ 마. (생략)</p> <p>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¹, G², G³, G⁴) <u>실적공사비</u>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p>	<p>3. 지수조정을 관련 용어의 정의</p> <p>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u>표준시장단가</u>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로 한다.</p> <p>A ~ F (생략)</p> <p>G : <u>표준시장단가</u>(공사에 한하며, G¹ : 토목부문, G² : 건축부문, G³ : 기계설비부문, G⁴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¹, G², G³, G⁴)의 <u>표준시장단가</u>에 포함한다. 이하같다.)</p> <p>H ~ Z (생략)</p> <p>나. ~ 다. (생략)</p> <p>1) ~ 3) (생략)</p> <p>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u>표준시장단가</u>의 전체 평균치</p> <p>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p> $H_0 = A_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_1 = A_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_0 = \text{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p>* 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p> $I_1 = \text{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표준시장단가계수)}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p>*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률</p> <p>6) ~ 7) (생략)</p> <p>5. 계약금액의 조정</p> <p>가. ~ 마. (생략)</p> <p>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¹, G², G³, G⁴) <u>표준시장단가</u>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p> <p>2) 물가변동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의 전체 평균치</p> <p>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p> <p>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p> <p>1) ~ 2) (생략)</p>	<p>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p> <p>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p> <p>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p> <p>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p> <p>1) ~ 2) (생략)</p>
6.~7. (생략)	6.~7. (생략)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생략)	가. (생략)
1) (생략)	1) (생략)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9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5조 및 제13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p> <p>1) <신설></p> <p>2) <신설></p> <p>2. 설계비 보상기준</p> <p>가. ~ 나. (생략)</p> <p>다. <신설></p>	<p>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p> <p>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p> <p>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p> <p>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p> <p>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ADD8E6;"> $\text{제안서보상비} = \text{공사예산} \times (0.1\% + (\text{제안서 점수} - 60) / 40) \times 0.2\%$ </div> <p>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 취소가 된 경우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p> <p>3) “1)” 또는 “2)”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또는 “2)”에 따라 선정된 각 자의 제안서보상비가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p> <p>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다.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p> <p>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p>	<p>라.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p> <p>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라. 보상통지</p> <p>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u>설계비 보상과</u>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p> <p>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u>설계비 보상</u> 요청이 없으면 <u>설계비 보상금</u>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p> <p>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정한 <u>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공사</u>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p>마. 보상통지</p> <p>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u>설계비 등 보상과</u>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p> <p>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u>설계비</u>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u>설계비</u>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3. 입찰공고시 공고사항</p> <p>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u>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u>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p>순 서</p> <p>제1절~제5절 (생략)</p> <p>제6절 <u>실적공사비에</u>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2관 <u>실적공사비</u> 원가계산</p> <p>제7절~제8절 (생략)</p> <p>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p> <p>1. (생략)</p> <p>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p> <p>가. ~ 마. (생략)</p> <p>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u>실적공사비</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사. (생략)</p> <p>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p> <p>가. ~ 나. (생략)</p> <p>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u>실적공사비</u>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u>실적공사비</u>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p> <p>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1. (생략)</p> <p>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p> <p>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u>실적공사비</u>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 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p>	<p>순 서</p> <p>제1절~제5절 (생략)</p> <p>제6절 <u>표준시장단가</u>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2관 <u>표준시장단가</u> 원가계산</p> <p>제7절~제8절 (생략)</p> <p>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p> <p>1. (생략)</p> <p>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p> <p>가. ~ 마. (생략)</p> <p>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u>표준시장단가</u>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사. (생략)</p> <p>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p> <p>가. ~ 나. (생략)</p> <p>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u>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u> 등을 토대로 <u>시장상황과 시공상황</u>을 고려하여 축적한 <u>표준시장단가</u>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u>표준시장단가</u>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p> <p>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1. (생략)</p> <p>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p> <p>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u>표준시장단가</u>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 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3관 공사 원가계산</p> <p>6. 경비</p> <p>다. 경비의 세비목</p> <p>1) ~ 24) (생략)</p> <p><u>〈신설〉</u></p> <p>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p>	<p>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3관 공사 원가계산</p> <p>6. 경비</p> <p>다. 경비의 세비목</p> <p>1) ~ 24) (현행과 같음)</p> <p>25) <u>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u></p> <p>26)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p>
<p>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1관 통칙</p> <p>1. 의의</p> <p>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p> <p>2. 적용범위</p> <p>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p> <p>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p> <p>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p>	<p>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p> <p>제1관 통칙</p> <p>1. 의의</p> <p>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p> <p>2. (삭제)</p> <p>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p> <p>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p> <p>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p> <p>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p> <p>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p> <p>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p> <p>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p> <p>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별지 제5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p> <p>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p> <p>1.~2. (생략)</p> <p>3. 계약심사의 구분</p> <p>가. (생략)</p> <p>1) (생략)</p> <p>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p> <p>3)~8) (생략)</p> <p>제4절 원가심사</p> <p>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p> <p>2. 심사 절차</p> <p>1)~3) (생략)</p> <p>4) 그밖에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p>나. (생략)</p> <p>1) ~ 2) (생략)</p> <p>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p>	<p>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p> <p>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p> <p>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p> <p>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p> <p>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p> <p>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별지 제5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p> <p>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p> <p>1.~2. (생략)</p> <p>3. 계약심사의 구분</p> <p>가. (생략)</p> <p>1) (생략)</p> <p>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p> <p>3)~8) (생략)</p> <p>제4절 원가심사</p> <p>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p> <p>2. 심사 절차</p> <p>1)~3) (생략)</p> <p>4) 그밖에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p>나. (생략)</p> <p>1) ~ 2) (생략)</p> <p>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제5절 설계변경 심사</p> <p>1. ~ 2. (생략)</p> <p>가. (생략)</p> <p>1) ~ 3)</p> <p>4) 그밖에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사 등 그 밖의 보조자료 	<p>제5절 설계변경 심사</p> <p>1. ~ 2. (생략)</p> <p>가. (생략)</p> <p>1) ~ 3)</p> <p>4) 그밖에 필요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u>표준시장단가</u>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사 등 그 밖의 보조자료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p>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p> <p>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p> <p>가. 대상</p> <p>1) ~ 15) (생략)</p> <p>16) ① ~ ⑥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⑦ <u>〈신설〉</u></p> <p>17) ~ 31) (생략)</p>	<p>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p> <p>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p> <p>가. 대상</p> <p>1) ~ 15) (현행과 동일)</p> <p>16) ① ~ ⑥ (현행과 동일)</p> <p style="padding-left: 20px;">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u>협약한 제품</u></p> <p>17) ~ 31) (현행과 동일)</p>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p>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p> <p>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p> <p>가. ~ 나. (생략)</p> <p>다. “나”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p> <p>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p>	<p>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p> <p>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p> <p>가. ~ 나. (생략)</p> <p>다. “나”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u>표준시장단가</u>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u>표준시장단가</u>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u>표준시장단가</u>로 한다.</p> <p>2) 신규비목의 단가는 <u>표준시장단가</u>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u>표준시장단가</u>로 한다.</p>

현 행	개 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2015. 6.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 1, 일부개정
<p>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p> <p>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p> <p>1) <신설></p> <p>2) <신설></p>	<p>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p> <p>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p> <p>1)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u></p> <p>2)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